

김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

제출년월일 : 2003. 4. .

제 출 자 : 김 제 시 장

의 안	2003-14
번 호	

1. 개정이유

지방세법령의 개정에 따라 김제시세조례를 개정하여 납기 및 세율등을 지방세법령의 체계에 맞도록 조례개정을 추진하고자 함.

2. 주요골자

- 세무서장이 소득세할 신고를 받거나 부과고지를 하는 때에는 시장에게 부과고지일 다음달 말일까지에서 다음달 15일까지로 통보기한 단축
- 주행세의 세율을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유류에 부과하는 교통세액의 1000분의 115에서 1000분의 120으로 세율을 높여 지방세수 증대
- 재산할 사업소세 납기가 7월1일~7월10일에서 7월1일~7월31일까지로 납기연장하여 납세자의 권익 보호

3. 참고사항

가. 관련법령 : 2003년 지방세 조례 표준안

나. 예산조치 : 부

다. 협의 등 : 별도조치 필요없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 대비표 : 별첨

2) 사전계획서 결재여부 : 부

3) 입법예고 결과 : 특기사항 없음

김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

김제시세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2조의2제3항중 “그 다음달 말일까지” 를 “그 다음달 15일까지”로 한다

제40조의3제1항중 “1,000분의 115” 를 “1,000분의 120”으로 한다

제51조제1항 및 동조제2항중 “시.읍.면” 을 각각 “시” 로 한다

제98조제2항중 “7월 10일까지” 를 “7월 31일까지”로 한다

부 칙

- ①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, 2003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
- ②(사업소세 재산할의 납기에 관한 적용례) 제98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
- ③(일반적 경과조치)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.

현행	개정
<p>제51조(농업소득조사위원회의 설치) ①수입금액·농업소득금액 그 밖에 농업소득세의 부과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기 위하여 <u>시·읍·면</u>에 농업소득조사위원회를 둔다</p> <p>②농업소득조사위원회는 당해 <u>시·읍·면</u>안의 납세의무자 또는 이해관계인에 대하여 그 직무상 필요한 사항을 질문하거나 조사할 수 있다.</p> <p>③·④ (생략)</p> <p>제98조(납기) ① (생략) ②재산할의 납세의무자는 매년 납부할 세액을 7월 1일부터 <u>7월 10일까지</u>를 납기로 하여 시장에게 신고·납부하여야 한다.</p>	<p>제51조(농업소득조사위원회의 설치) ①----- ----- ----- <u>시</u>----- -----</p> <p>②----- <u>시</u>----- ----- -----</p> <p>③·④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98조(납기) ① (현행과 같음) ②----- ----- ----- <u>까지</u>----- -----</p>

김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의안번호	2003-14
------	---------

발의년월일 : 2003. 5. 10

제안자 : 오인근 위원외 인

1. 수정이유

- 김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부칙(시행일)의 2003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함은 소급입법의 금지규정에 위배됨에 따라 조례안에 대한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려는 것임.

2. 수정 주요 골자

- “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, 2003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.”를 “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”로 수정함 (안 부칙 제1항)

3. 따로 붙임

- 김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.
- 수정안 조문 대비표.

김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김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중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안 부칙 제1항중 “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, 2003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.” 를 “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” 로 한다.

수 정 안 대 비 표

현	행	개 정 안	수 정 안
<신 설>		<p>부칙</p> <p>①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 하되, 2003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.</p> <p>② ~ ③ (생략)</p>	<p>부칙</p> <p>①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 행한다.</p> <p>② ~ ③ (개정안과 같음)</p>